



나주 동박굴재 사건

【결정사안】

서치호 외 27명이 1951년 2월 26일 정오경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뒷산(속칭 동박굴재)에서 인민군 점령시기의 부역(附逆) 혐의와 수복(收復)이후의 빨치산 협력혐의로 나주경찰서 특공대원들에 의해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총살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

【결정요지】

1. 서치호 외 27명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2월 26일 정오경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뒷산(속칭 동박굴재)에서 나주경찰서 특공대원들에 의해 집단총살당했다.

2. 위 사건의 경위를 보면, 나주경찰서 특공대가 1951년 2월 24일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 원봉마을 주민 3명을 ‘빨갱이’로 지목, 연행하여 봉황지서에 감금하였다가 2월 26일 새벽에 봉황면 철천리 3구 선동마을로 끌고 갔다. 비슷한 시각 경찰 특공대원들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나주시 봉황면 선동마을과 철야마을 주민들을 각각 소집한 후, 입산자(入山者)의 가족과 현장에서 지목된 젊은 남자들, 가족의 연행에 항의하는 여성 등 29명을 따로 분류하였다. 당일 정오경 경찰 특공대는 송현리 주민 3명과 분류한 철천리 주민 29명 등 총 32명을 앞뒤에서 포위하여 철천리 뒷산(동박굴재)으로 끌고 가서 총살했는데, 그 중 4명은 현장에서 달아나 생존하였다.

3. 조사결과, 위 사건의 희생자는 서치호(다-2457), 김도관(다-2458), 이동(다-2459), 양창호(다-2460), 안만제(다-2461), 김도현(다-2462), 정문채(다-2463), 정찬규(다-2465), 김다복(다-2466), 최성교(다-2468), 최정교(다-2469), 서일기(다-2472), 김용구(다-2472), 서정수(다-2473), 홍공순(다-2474), 서방열(다-2475), 서판대(다-2476), 임미례(다-2476), 서광순(다-2477), 정병수(다-2478), 서공수(다-2479), 최애순(다-2479), 정판옥(다-2480), 정승주(다-2481), 정홍점(다-2482), 홍홍현(다-2482), 서상채(다-2483), 안세월택(미신청) 등 모두 28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4. 희생자 대다수는 나주시 봉황면 철야마을, 선동마을, 원봉마을 주민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20~30대가 가장 많았고, 여성도 7명이나 포함되었다.

5. 조사결과,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비전투원인 민간인이었음이 밝혀졌다. 다만 철천리

주민 중 일부 젊은 사람들이 인민군 점령기에 점령정책에 동조한 경우가 있었고, 수복 후에는 그들 중 상당수가 입산한 일이 있었다. 희생자들은 사건 발생 당시 인근 다도면 국사봉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빨치산에게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혐의 아래 집단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경찰이 주민분류 기준으로 처형대상자 ‘명단’을 사용했다는 증언을 통해 볼 때 이 사건은 계획적인 ‘입산자 가족 및 부역혐의자 임의처형(任意處刑)’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경찰기록에는 이들이 작전 중에 사살된 ‘적’으로 되어 있어 민간인희생의 실상이 은폐된 채 공비토벌 전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6. 나주경찰서 특공대는 처형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부역 여부 또는 빨치산 협력여부에 대해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법적 처리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설령 희생자들이 실제 부역혐의자, 빨치산 협력자였다고 할지라도 나주경찰서 특공대는 전시 계엄령 하에서 부역혐의 민간인을 처벌하는 최소한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국방경비법(國防警備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非常事態下의 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措置令)」중 어느 것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또한 특공대는 당시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부역자 처벌을 막기 위해 제정된 「부역행위특별처리법(附逆行爲特別處理法)」과 「사형금지법(私刑禁止法)」이 있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주민들을 즉결처형하였다.

7. 나주경찰서 특공대는 수복 이후 공비토벌과 치안유지를 위해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과 의용경찰로 구성되었는데, 이 사건의 직접 가해자는 봉황면에 파견된 특공대 1개 소대(소대장 공명희, 孔明喜)로 확인되었다. 상급 지휘기관인 나주경찰서 서장(경감 김영태, 金永台)이 피해 주민들의 연행 및 총살 명령을 직접 내렸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본 사건의 지휘·명령권은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의 권한은 상부기관인 전라남도경찰국·치안국·내무부로부터 위임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경찰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희생의 최종적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8. 나주 동박굴재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소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관할지역 주민을 임의적으로 불법 처형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었다. 전시 비상사태하에서 법적절차를 충분히 지키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무장 민간인들을 즉결처형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희생 당사자의 죽음도 억울하지만 유족들 역시 불시의 가족구성원 상실 이후 지금까지 경제적 고통과 심리적 위축을 크게 겪었고, 소수지만 연좌제(連坐制)에 따라 직업선택이 제한된 경우도 있었다. 나주 동박굴재 사건의 진실이 이와 같이 규명되었기에 국가는 사건 희생자 및 관련 유족들에게 성의를 다하여 사과하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권고한다.



【전 문】

【사 건】 다-2460 외 26건 나주 동박굴재 사건

【신청인】 양성일 외 26명

【결정일】 2007. 4. 17.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음을 결정한다.

【이 유】

I. 사건 개요

1. 사건 접수 및 처리

양성일 외 26명은 2006년 3월 20일 진실화해위원회에 한국전쟁 시기 전남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뒷산(속칭 동박굴재)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신청인들이 접수한 사건 수는 27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건 관련 희생자 수는 36명이었다.

〈표 1〉 신청서 접수현황

연번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희생자	비고
1	'06.3.20.	2457	서의광	서치호(남, 당시 32세)	부 사망
2	'06.3.20.	2458	김영복	김도관(남, 당시 35세)	부 사망
3	'06.3.20.	2459	이성문	이 동(남, 당시 48세)	부 사망
4	'06.3.20.	2460	양성일	양창호(남, 당시 33세)	부 사망
5	'06.3.20.	2461	김재연	안만제(남, 당시 68세)	시부 사망
6	'06.3.20.	2462	김영산	김도현(남, 당시 31세)	당숙 사망
7	'06.3.20.	2463	정찬술	정문채(남, 당시 31세)	부 사망
8	'06.3.20.	2464	이문선	이병운(남, 당시 25세), 한단오(여, 당시 29세)	부모 사망
9	'06.3.20.	2465	정찬복	정찬규(남, 당시 30세)	형 사망

연번	접수일자	사건 번호	신청인	희생자	비고
10	'06.3.20.	2466	김정웅	김다복(남, 당시 37세)	부 사망
11	'06.3.20.	2467	양일순	이장신(남, 당시 27세)	시동생 사망
12	'06.3.20.	2468	최인교	최성교(남, 당시 19세)	형 사망
13	'06.3.20.	2469	최영재	최정교(남, 당시 28세)	형 사망
14	'06.3.20.	2471	양순자	이장학(남, 당시 23세)	시숙부 사망
15	'06.3.20.	2472	서병현	서일기(남, 당시 55세), 김용구덕(여, 당시 51세)	부모 사망
16	'06.3.20.	2473	서상원	서정수(남, 당시 56세)	부 사망
17	'06.3.20.	2474	서돈준	홍공순(여, 당시 25세)	모 사망
18	'06.3.20.	2475	서재중	서방열(남, 당시 29세)	부 사망
19	'06.3.20.	2476	서상국	서판대(남, 당시 43세), 임미례(여, 당시 42세)	부모 사망
20	'06.3.20.	2477	서상기	서광순(남, 당시 38세)	부 사망
21	'06.3.20.	2478	정병률	정병수(남, 당시 17세)	동생 사망
22	'06.3.20.	2479	서성희	서공수(남, 당시 54세), 최애순(여, 당시 52세)	조부모 사망
23	'06.3.20.	2480	정학균	정판옥(남, 당시 27세)	부 사망
24	'06.3.20.	2481	정현진	정승주(남, 당시 26세)	부 사망
25	'06.3.20.	2482	서호준	정홍점(여, 당시 50세), 홍홍현(여, 당시 28세)	모, 조모 사망
26	'06.3.20.	2483	서병준	서상채(남, 당시 34세)	부 사망
27	'06.3.20.	2484	서경수	서계흠(남, 당시 41세), 배난순(여, 당시 46세) 서하수(남, 당시 21세), 서근수(남, 당시 19세) 서용수(남, 당시 17세)	일가족 사망

2. 신청인의 주장

나주 동박굴재 사건은 신청인들이 1951년 2월 26일(음력 1951년 1월 21일)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철야마을 뒷산(속칭 동박굴재)에서 봉황지서(지서장 이○○) 소속 경찰과 나주경찰서 소속 특공대(특공대장 '공명')¹⁾에 의해 철천리 1구·2구, 각동리(이상 철야마을)²⁾와 철

- 1) 신청인들이 특공대장이라고 주장하는 '공명'의 본명은 조사결과 '공명희'로 밝혀졌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할 때는 '공명'으로 기술하였다.
- 2) 철야마을은 마을 구성원의 인식상 유촌·등내·수각마을을 일컫는다. 행정구역상의 편제로는 철천1구의 유촌, 철천2구의 등내로 되어 있으면서 수각마을은 빠져있지만 실제로 철천1구는 수각과 유촌의 일부가, 철천2구는 등내와 유촌 일부가 합쳐져 있다. 전통적 마을 구분과는 무관하게 안길을 중심으로 좌측은 유촌, 우측은 등내로 구분해버린 것이다. 그러나 예부터 한터울을 이루어왔던 마을이기에 세 마을을 철야마을이라고 부른다. 그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철야에 속해 있었던 각동리 미동·내



철천리 3구(선동마을), 송현리(원봉마을) 주민 등 약 40여 명이 불법적으로 희생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다.

II. 조사의 근거와 목적

양성일 외 26명은 2006년 3월 20일 진실화해위원회에 나주 동박굴재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본법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제1항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 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집단희생규명위원회는 2006년 5월 30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동 사건을 검토·심의한 후 사건의 인지도와 피해규모, 종합성, 조사의 완결성 그리고 입증자료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개시를 의결하였다.

III. 조사의 방법 및 경과

1. 신청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7월 19일부터 신청인 조사에 착수하여, 2006년 9월 22일까지 개별 신청인 27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2. 가해혐의자 및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사건 당시 나주경찰서 소속 특공대원 및 봉황지서 재직 경찰관, 대한청년단원을 비롯한 우익청년단체 회원 등 가해행위에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참고인 총 15명을 조사하였다. 또한 생존자 등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추정되는 참고인 11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3. 자료 조사

- 『한국경찰대 일일보고서 I』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자료집』 3권, 1996, 251쪽)

동·수각·창등·철천리 유촌·등내 등이 넓게는 철야마을로 인식된다.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사건 발생 마을인 철야마을은 행정구역상 정확하게 표현하면 철천리 1구와 2구 그리고 각동리의 일부 마을이다. 보고서에서 철야마을을 표현할 때 정확하게 표기해야 할 때는 철천리와 각동리로 나누어 표기하고 폭넓게 표현할 때는 철천리 철야마을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 「신원기록대상자연명부」(나주경찰서 정보과3계 보존자료)
- 「안○○ 외 4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형사합의부 刑公슴 제1호)
- 「안○○ 판결문」(광주지방법원 刑公슴 제65호)
- 봉황면지발간추진위원회, 『봉황면지』, 1992, 120쪽.
- 나주시문화원, 『나주이야기-근·현대편』, 2003, 184~188쪽.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 2005, 468~469쪽.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전쟁과 집단학살』, 2002, 141~145쪽.
- 「선동마을 생존자 김영태씨의 증언」, 2000, 총 2쪽.
- 나주시의회, 「봉황 철천리 등 양민학살사건 국회차원 진상조사요구 청원서 외 1건 회부」, 2001.12.15, 총 14쪽.
- 나주시 의회 운영위원회, 「봉황 철천리 등 양민학살사건 국회차원 진상조사요구 청원서 심사결과 보고」, 2001.12.20, 총 3쪽.
- 국회, 「청원회부 통지」, 2001.12.29, 총 8쪽.
- 국회사무처, 제244회 국회(임시회), 「과거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2003.12.16), 총 17쪽.
- 기타 신문자료(『나주투데이』, 2001.8.13일자, 2001.9.6일자 등)

4. 현장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6월 27일 봉황유족회 회장 양성일, 부회장 서병현, 총무 정학군과 함께 마을별 주민 집결장소와 희생자 연행경로 그리고 희생장소에 대해 사건발생 순서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인들의 주장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IV. 조사결과

1. 사건의 실재여부

가. 조사내용

먼저 신청인들이 주장하듯이 나주시 동박골재에서 민간인희생사건이 실재했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본 사건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식 기록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료조사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을 통해 추적하였다.



신청인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먼저 희생자 ‘서광순’을 제외하고³⁾ 신청인들은 사건발생 이후 20일 만에 모두 시신을 수습했다고 진술하였다. 대체로 사건 발생 며칠 후 가족, 일가 친척, 마을주민의 도움을 받아 대나무 발로 시신을 싸서 동박굴재 옆에 임시 가매장했다가, 몇 년이 지난 후 선산으로 이장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였다.⁴⁾ 특히 이성문은 부친 ‘이동’의 시신을 수습할 당시 총알이 목을 관통한 상태에서 앓은 채로 사망한 모습을 목격했으며, 양성일은 부친 ‘양창호’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피가 고여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자연사(自然死)가 아닌 총살에 의한 사망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장생존자인 김영태가 생존 시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희생자들에게 2회에 걸쳐 총격을 가했는데, 노인들을 먼저 죽이자 서방열이 ‘공명’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했지만,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다시 총격이 시작되자 세 사람이 도망치고 한 사람은 시체 사이로 들어가 생존했다고 하였다.⁵⁾

당시 봉황면 우익청년단체 회원 중 대한청년단원인 조○○과 봉황면 학도의용대 감찰부장이었던 이○○은 본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이○○은 사건 발생 다음날 바로 소문을 들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경찰이 철천리 주민 중 부역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작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⁶⁾

신청인들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할 당시 제출한 희생자 제적등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사망일이 사건 발생일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1950년대 중·후반, 정○○의 경우는 1981년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당시 여건상 사망신고를 곧바로 할 수 없었고 사망일자도 제대로 기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국 전쟁 시기 집단희생된 피해자들의 경우, 유족들이 신고를 기피하여 사망 일자나 장소가 잘못 기재된 것은 매우 흔한 일이며, 오히려 정확하게 신고 기재된 경우가 매우 드문 형편이다.

다만 희생자 서○○의 제적등본에는 “단기 4284(1951)년 1월 21일 오전 12시 본적지에서 사망”으로 기재되었는데, 이 음력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본 사건 발생일 1951년 2월 26일과 일치한다. 또 희생자 서○○의 경우, “단기 4284(1951)년 1월 20일 오전 12시 본적지에서 사망”으로 기재되었는데, 이 날이 실제로는 희생자의 제사 드는 날(入齋日)이어서, 실제 사망일은 다음날로 본 사건 발생일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의 제적등본상의 사망

3) 서광순만 유일하게 시신수습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4) 서의광 진술조서, 5쪽; 김영복 진술조서, 5쪽; 이성문 진술조서, 7쪽; 양성일 진술조서, 6쪽; 김영산 진술조서, 5쪽; 정찬술 진술조서, 4~5쪽; 이문선 진술조서, 6쪽; 정찬복 진술조서, 6쪽; 김정웅 진술조서, 4쪽; 양일순 진술조서, 4쪽; 최영재 진술조서, 4쪽; 양순자 진술조서, 3쪽; 서병현 진술조서, 5쪽; 서상원 진술조서, 6쪽; 서돈준 진술조서, 8쪽; 서재중 진술조서, 6~7쪽; 서상국 진술조서, 7쪽; 서상기 진술조서, 4쪽; 정병률 진술조서, 5쪽; 서성희 진술조서, 6~7쪽; 정학균 진술조서, 4쪽; 정현진 진술조서, 3~4쪽; 서효준 진술조서, 6쪽; 서병준 진술조서, 6~7쪽; 서경수 진술조서, 4쪽.

5) 『나주투데이』 2001.9.6일자.

6) 조○○의 진술녹취록, 1~2쪽; 이○○ 진술조서2, 1~2쪽.

기록은 본 사건의 실재여부를 유추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자료이며, 사망시간이 모두 오전 12시⁷⁾로 되어 있어 희생시간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내무부치안국 비상경비 총사령부에서 작성한 「한국경찰대 일일보고서 I」(Daily Enemy Activity Report) 또한 1951. 2. 26. 철천리 뒷산에서 '28명의 적 사살'이라는 기록이 있으므로 사망자가 '적'인지의 사실여부를 떠나 사건의 실재여부를 입증해주는 자료이다.

나주경찰서 정보3과에서 작성한 「신원기록대상자연명부」에 나타난 '서○○' 처단기록은 사건 발생일이 적시되지 않았으나, 서○○의 진실규명 신청요지와 서○○의 제적등본 기록을 종합할 때 본 사건으로 희생되었음이 확실하다. 따라서 '서○○'의 처단기록 또한 사건의 실재여부를 확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나. 소결

1951년 2월 26일 오전 12시경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와 철천리 주민들이 봉황면 철천리 뒷산 일명 동박굴재에서 집단적으로 총살되었음은 관련 유족들의 시신수습과 매장사실 증언, 제적등본, 경찰의 공식자료에 의거할 때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판단된다.

2. 희생규모와 희생자의 신원

가. 조사내용

1) 희생규모

본 사건의 희생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는 진실규명신청서에서 제시된 희생자 명단과 '봉황양민학살희생자위령비(이하 '봉황위령비')'에 기재된 명단, 그리고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수집된 문헌자료와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 등을 들 수 있다.

신청인 조사과정에서 전체 희생규모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진술은 나오지 않았지만 희생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언급들은 있었다. 정찬복은 "안세월대를 제외하고 선동마을 희생자는 모두 신청했다", 김영복은 "선동마을 희생자는 아홉에서 열 명 정도 된다", 이성문은 "선동마을에서 15명가량 연행되었다", 서성희는 "제사가 30여 호 되는 것으로 들었다", 서재중은 "철야마을에 한 날 제사가 23~24호가 된다"고 진술하였다.⁸⁾

그러나 경찰의 공식문서라고 할 수 있는 나주경찰서의 「신원기록대상자연명부」에는 '부락 민청원 부역처단'이라는 특이사항으로 서○○ 1인의 처형사실만 기재되어 있다.

7) 사망시간(오전12시)은 신청인들의 진술조서 작성과정에서도 거의 일치하게 나타난다.

8) 정찬복 진술조서, 7쪽; 김영복 진술조서, 4쪽; 이성문 진술조서, 5쪽; 서성희 진술조서, 5쪽; 서재중 진술조서, 4쪽.



한편 내무부치안국 비상경비 총사령부에서 작성한 「한국경찰대 일일보고서 I」⁹⁾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철천리 뒷산에서 '28명의 적 사살'로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적(enemy)은 동 사건으로 희생당한 민간인이라 할 수 있으며, 이 기록에 의하면 그 희생자 수는 28명인 셈이다.

『봉황면지』¹⁰⁾는 “마을 주민 30여 명을 분리시킨 뒤 이들을 철천리 뒷산으로 데리고 가서 희생시켰는데, 그 때 끌려간 사람 중에서 몇 명은 도망쳐서 살아남고 죽은 사람은 23~30명 정도”로 기록하고 있어, 희생규모를 23~3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봉황위령비’는 사건의 희생자를 포함하여, 한국전쟁 전 시기에 걸쳐 군·경에 의해 희생된 봉황면 민간인 87명을 추모하기 위해 2002년 건립되었다. ‘봉황위령비’상의 명단과 희생자 규모는 사건관련 유족들의 자체조사와 생존자 및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희생규모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봉황위령비’에서 ‘기일(忌日) 1951년 2월 26일’로 기록된 희생자는 철천리 27명과 송현리 3명으로 총 30명이다. 다만 위령비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이 호적상 이름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 집에서 부르는 실명(實名)을 기재했기 때문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동 사건의 진실규명 신청서에 언급된 희생자와 ‘봉황위령비’의 명단, 그리고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에서 확인된 사실을 종합한 결과 나주 동박굴재에서 사망한 희생자는 28명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진실화해위원회 신청 건 중 9인은 제외시켰는데, 그것은 이들이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것은 확실하나 동박굴재에서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¹¹⁾ 본 사건 희생자인지에 대한 개인별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표 2〉 희생규모 확정을 위한 판단 근거

연번	마을	희생자	신청 여부	봉황위령비 기재여부	특이사항	판단
1	선동	김도관	신청	기재		확정
2	선동	이 동	신청	기재		확정
3	선동	양창호	신청	기재		확정

9) Daily Enemy Activity Report, 1951.3.2일자.

10) 봉황면지발간추진위원회, 『봉황면지』, 1992, 120쪽.

11) 이들 유족들은 봉황유족회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 시기에 철천리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 희생자로 신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나주 동박굴재 사건 희생자명단에서 제외된 9인은 사망경위에 따라 추후 군·경에 의한 광주전남지역 민간인희생사건, 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등으로 병합할 예정이다.

연번	마을	희생자	신청 여부	봉황위령비 기재여부	특이사항	판단
4	선동	안만제	신청	기재		확정
5	선동	김도현	신청	'김기현'으로 기재		확정
6	선동	정문채	신청	기재		확정
7	선동	정찬규	신청	기재		확정
8	선동	김다복	신청	기재		확정
9	선동	안세월댁 ¹²⁾	미신청	기재	희생자가 확실하나 신청인이 없음	확정
10	선동	이장학	신청	'이관수'로 기재	본 사건 희생자가 아니라는 진술 있음	제외
11	선동	한단오	신청	기재	본 사건 희생자가 아니라는 진술 있음	제외
12	선동	이병윤	신청	1949.8.7 사망으로 기재	본 사건 발생 전 '여순사건' 관련으로 희생	제외
13	선동	이장신	신청	1950.7.10 사망 '이공색'으로 기재	'국민보도연맹사건' 관련 희생	제외
14	철야	서치호	신청	기재		확정
15	철야	서일기	신청	기재		확정
16	철야	김옹구덕	신청	기재		확정
17	철야	서정수	신청	기재		확정
18	철야	홍공순	신청	기재		확정
19	철야	서방열	신청	기재		확정
20	철야	서판대	신청	기재		확정
21	철야	임미래	신청	기재		확정
22	철야	서광순	신청	기재		확정
23	철야	정병수	신청	기재		확정
24	철야	서공수	신청	기재		확정
25	철야	최애순	신청	기재		확정

12) 희생자 안세월댁(세월댁은 택호, 본명 모름)은 철천리 3구 선동마을 주민 안○○의 모친으로서 안○○은 전쟁 전 남로당 가입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2년의 선고를 받았고 본 사건 당시 입산중이었다. 안세월댁은 본 사건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나 가족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없었다는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이 다수 있었다.



연번	마을	희생자	신청 여부	봉황위령비 기재여부	특이사항	판단
26	철야	정판옥	신청	기재		확정
27	철야	정승주	신청	기재		확정
28	철야	정홍점	신청	기재		확정
29	철야	홍홍현	신청	기재		확정
30	철야	서계흠	신청	기재 안 됨	영암 금정면에서 희생	제외
31	철야	배난순	신청	기재 안 됨	영암 금정면에서 희생	제외
32	철야	서하수	신청	기재 안 됨	전쟁당시 행불	제외
33	철야	서근수	신청	기재 안 됨	전쟁당시 행불	제외
34	철야	서용수	신청	기재 안 됨	전쟁당시 행불	제외
35	송현	서상채	신청	기재		확정
36	송현	최성교	신청	기재		확정
37	송현	최정교	신청	기재		확정

자료조사와 신청인 및 참고인 조사, 그리고 ‘봉황위령비’에 기재된 명단대조결과 최종 확정된 희생자는 다음 표와 같다.

〈표 3〉 희생규모

마을	희생자 확정 명단	제외자 명단
철천리 3구 (선동마을)	김도관, 이동, 양창호, 안만제, 김기현, 정문채, 정찬규 김다복, 안세월댁(미신청)	이병윤, 한단오 이장신, 이장학
철천리 1·2구 (철야마을)	서일기, 김용구덕, 서정수, 홍공순, 서방열, 서판대, 임미래 정병수, 서공수, 최애순, 정승주, 정홍점, 홍홍현	서계흠, 배난순 서하수 서근수, 서용수
각동리(철야마을)	서치호, 서광순, 정판옥	
송현리(원봉마을)	서상채, 최정교, 최성교	
계	28	9

2) 희생자의 신원

본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들의 당시 신원은 다음과 같다.

〈표 4〉 희생자의 신원

연번	이름	성별	나이	마을	직업	비고
1	김도관	남	35	선동	농업, 마을구장	
2	이 동	남	48	선동	농업	
3	양창호	남	33	선동	농업, 마을구장	
4	안만재	남	68	선동	농업	장인과 사위 김다복이 처가에 갔다가 희생
5	김다복	남	37	신동리	농업	
6	김도현	남	31	선동	농업, 목공	
7	정문채	남	31	선동	농업	
8	정찬규	남	30	선동	농업	
9	서치호	남	32	철야	농업	
10	서일기	남	55	철야	농업	부부
11	김응구덕	여	51	철야	농업, 주부	
12	서정수	남	56	철야	농업	시부와 며느리 홍공순은 임신8월
13	홍공순	여	25	철야	농업, 주부	
14	서방열	남	29	철야	봉황면사무소 면서기	
15	서판대	남	43	철야	농업, 마을 이장	부부
16	임미례	여	42	철야	농업, 주부	
17	서광순	남	38	철야	농업, 마을 일	
18	정병수	남	17	철야	초등학교 졸업후 농업	
19	서공수	남	54	철야	농업	부부
20	최애순	여	52	철야	농업, 주부	
21	정판옥	남	27	철야	농업, 마을반장	
22	정승주	남	26	철야	농업, 마을반장	
23	정홍점	여	52	철야	농업, 주부	고부
24	홍홍현	여	28	철야	농업, 주부	
25	서상채	남	34	송현리	농업	
26	최성교	남	20	송현리	농업	
27	최정교	남	28	송현리	농업	
28	안세월덕	여	50대	선동	농업, 주부	미신청자



희생자들의 마을별·연령별·성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¹³⁾

〈표 5〉 마을별 희생자 분포

마을	철천리 1·2구, 각동리(철야마을)	철천리 3구(선동마을)	송현리(원봉마을)	계
희생자수	16	9	3	28
비율(%)	57.2	32.1	10.7	100

〈표 6〉 희생자의 연령 분포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희생자	1	7	9	3	7	1	28
비율(%)	3.6	25	32.1	10.7	25	3.6	100

〈표 7〉 희생자의 성별 분포

성별	남	여	계
희생자	21	7	28
비율(%)	75	25	100

조사결과 희생자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거나, 주부인 평범한 주민들로 확인되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30대가 많은 비율(57.1%)을 차지하나, 10대나 50대 이상의 노령 층도 적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7명(25%)이었다.

나. 소결

본 사건의 희생자 수는 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신청인들의 진술과 ‘봉황위령비’의 명단을 비교·종합한 결과, 28명(미신청 1명 포함)으로 확정되었다. 희생자는 서치호(다-2457), 김도관(다-2458), 이동(다-2459), 양창호(다-2460), 안만제(다-2461), 김도현(다-2462), 정문채(다-2463), 정찬규(다-2465), 김다복(다-2466), 최성교(다-2468), 최정교(다-2469), 서일기(다-2472), 김옹구덕(다-2472), 서정수(다-2473), 홍공순(다-

13) 신동리 주민인 김다복은 선동마을에 갔다가 희생되었기 때문에 선동마을로 분류하였다.

2474), 서방열(다-2475), 서판대(다-2476), 임미례(다-2476), 서광순(다-2477), 정병수(다-2478), 서공수(다-2479), 최애순(다-2479), 정판옥(다-2480), 정승주(다-2481), 정홍점(다-2482), 홍홍현(다-2482), 서상채(다-2483), 안세월택(미신청)이다.

희생자들은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1·2구, 각동리(철아마을) 주민과 철천리 3구(선동마을), 송현리(원봉마을) 주민들이었다. 사건 당시 희생자들의 직업은 대부분 농업이었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마을 구장이나 반장 등을 역임하였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가장 많았고, 여성도 7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3. 희생 경위

가. 조사 내용

희생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먼저 사건 발생 당시 마을에서 경찰과 빨치산 사이에 교전이 있었고, 희생자들이 그 과정에서 사망한 입산자 또는 빨치산이었는데의 여부, 둘째 인민군 점령시기 인민군의 점령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부역자였기 때문에 부역자 처리과정에 의해 희생되었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이 수복 이후 인근 다도면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빨치산 활동과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통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한국경찰대 일일보고서 I」¹⁴⁾에는 본 사건 기록으로 추정되는 보고내용이 있다.

○ 일일 적정보고서(1951. 3. 2.)

“약 50명의 적들이 철천리 뒷산에 재결집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1명의 봉황지서원(members)들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조우한 빨갱이 50명을 공격한 결과 적 28명을 사살하고 소 1마리를 노획하였다.”

(원문) HQ, National Police, Republic of Korea : Daily Enemy Activity Report

“010900 NAJU(BP 9178) Police Station Sector, Cholla Namdo

270000, having been informed that approximately 50 enemy are regrouping at the rear mountain of CHOLCHON-NI, 11 BONGHWANG sub-stations members were

14) 『빨치산자료집』에 수록된 「한국경찰대 일일보고서 I」는 한국전쟁시기인 1951.1.10.~1951.12.31. 사이 전국 각지 경찰의 작전상황 및 전황에 대한 일일보고를 수록하고 있다. 이 자료는 내무부 치안국 비상경비총사령부 작전참모부가 「치안일보」 및 「작전일보」 형태로 작성하여 육군본부 외 27곳에 배포한 것이었다. 육군본부는 이를 유엔군 사령부에 보고하였으며, 유엔군 사령부에서 이 문서를 영어로 번역·보존하였다가 한국전쟁 후 미국 워싱턴의 국립문서보관소(NARA)에 이관하였는데, 한림대학교에서 수집하여 발간하였다.



immediately dispatched to the scene and attacked 50 reds passing-by, killing 28 enemy and capturing 1 cow.”

보고서에 표시된 숫자는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데 ‘270000’은 27일 0시, 즉 26일 24시를 뜻한다. 이것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건 발생일과 일치하며 철천리 뒷산이라는 희생장소 또한 주민들의 주장과 동일하다. 그리고 조사결과 확인된 희생규모와 일일보고서에 기록된 사살된 ‘적’의 수 또한 일치하므로, 이 일일보고서는 나주 동박굴재 사건 관련 기록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010900’은 3월 1일 오전 9시에 나주경찰서가 치안국에 사건을 보고한 시간으로 판단되므로 본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분명히 나주경찰서에 곧바로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일보고서는 11명의 봉황지서원(경찰)이 ‘적’ 28명을 사살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가해자와 희생자의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먼저 가해자로는 11명의 소속을 ‘봉황지서원’으로 언급하고 있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특공대원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당시 특공대가 봉황지서에 파견 나왔기 때문에 신청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기록은 아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민간인 희생자들을 빨갱이(reds), 적(enemy)으로 규정하여 전과로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기록대로라면 동박굴재에서 사망한 희생자들은 순수한 민간인이 아니라 ‘적’ 혹은 ‘빨갱이’이다.

위 『일일보고서』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출신 참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참고인 김○○(당시 봉황지서 근무, 특공대 공명희 소대 3분대장)는 “당시 봉황면에서 통상적인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여 빨치산을 한 두 명 정도 죽인 경우는 있었지만, 28명의 공비를 사살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¹⁵⁾ 따라서 『일일보고서』에서 철천리 뒷산에서 ‘적 28명 사살’이라고 적시된 내용과 같은 공비토벌 작전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본 사건이 군이 주도한 공비와의 교전 혹은 공비사살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호남지역 공비토벌 임무를 담당했던 국군 11사단의 공비토벌작전 상황과 군부대 이동경로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으나, 이 사건과의 관련성은 찾을 수 없었다. 국군 11사단의 나주지역 공비토벌작전으로는 1951년 1월 제20연대 제2대대 제5중대 및 제3대대 제11중대가 나주군 전불사 및 암천리에 집결하여 공비를 공격하였다는 기록이 유일하다.¹⁶⁾ 요컨대 동 사건발생 지역에서 11사단의 작전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¹⁷⁾

15) 김○○의 진술녹취록2, 5~7쪽.

16) 보병제11사단, 『화랑부대전사』, 1986, 178쪽.

17) 사건 발생 시기 국군 11사단의 작전 상황을 개략하면 1951년 2월 20일 함평군 해보면 불갑산 일대에서 소탕작전을 대대적으로

사건 관련 참고인, 특히 생존자와 목격자들은 사건 당일 새벽(선동마을)과 아침(철야마을)에 집에 있다가 경찰의 소집명령에 따라 지정된 곳에 모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경찰이 이렇게 소집한 주민들 가운데 일부를 연행하여 총살하였으므로, 이것은 분명 교전과정에서 적을 사살한 것이 아니며, 희생자들 또한 민간인이라는 점이 확실하다.

다음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이 수복 이후 부역혐의자 처벌과정에서 발생한 처형 사건인지를 조사하였다. 수복한 이후 경찰은 일반적으로 치안을 확립하고 인민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부역자를 색출·처벌하였다. 내무부 치안국은 “6·25전란을 계기로 북한 괴뢰군의 불법남침에 호응하여…… 민족진영의 애국인사를 학살 또는 방화, 탈취, 강간, 파괴의 야수적 행동을 자행하는 등 대한민국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행동”을 부역행위로,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고 또한 가담한 분자”를 부역자로 정의하였다.¹⁸⁾

또한 “국가는 그 존립조건을 파괴한 자에 대하여 실용(實用)할 수는 없다. 따라서 극렬분자에 대하여서는 준엄한 형죄(刑罪)을 과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다.¹⁹⁾ 내무부 치안국의 이러한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당시 곳곳에서 부역자 체포와 처벌이 이루어졌다. 봉황면에서도 경찰은 수복 이후 공비토벌과 함께 관내 주민들을 상대로 부역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벌였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희생자 개개인의 부역행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희생자와 사건 마을 주민의 과거 좌익활동 경력을 파악할 수 있는 행형기록을 조회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건 희생자라고 신청했던 사람들의 전과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고 마을 주민, ‘안○○’과 ‘안○○ 외 4인(안○○·서○○·이○○·김○○·김○○)’에 대한 판결문을 입수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철천리 3구 선동마을 출신인 안○○ 외 4인이 전쟁 전 남로당 가입, 뼈라 살포 등의 이유로 구속되어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있었다. 특히 안○○이 인민군 점령시기 봉황면 분주소장을 역임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 판결문을 통해 전쟁 전과 인민군 점령시기 철천리의 분위기를 알 수 있다.

참고인들도 철천리 주민들의 부역행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참고인 이○○과 강○○은

진행했고(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59권, 1987, 1,105~1,112쪽), 1951년 3월 3일 장성군 삼계면 소재 태청산에서 잔비 소탕작전을 진행하여 전과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한국전쟁사료』 59권, 1,118~1,122쪽).

18) 처벌의 범위와 관련하여 부역자에 대한 개념은 적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략적으로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쟁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적에 가담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부역자는 어느 국가에서나 국가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한국전쟁기에서도 부역행위를 이적이거나 간첩행위로 간주하여 반국가적 범죄로 다루었다. 2. 「부역행위특별처리법」에는 부역자를 ‘역도가 침점(浸占)한 지역에서 그 침점기간 중에 역도에 협력한 자’라고 규정하고 자세히는 「국가보안법」 및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자진하여 협력한 자 뿐만 아니라 역도의 압력으로 정치적 이용을 당한 행위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부하노동한 경우, 역도가 조직한 단체에 단순히 가입에 그친 경우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한인섭 교수는 ‘한국전쟁과 형사법’이라는 논문에서 ‘부역자란 적 치하에서 혹은 자진하여 혹은 위협과 강제에 못 이겨 역도에게 협력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19) 『한국경찰10년사』, 267~269쪽.



“철천리 주민 중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인민군 점령시기 ‘민청’ 등에 가입한 경우가 많았으며, 적극적으로 부역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복 직전 처벌을 피해서 입산을 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강○○은 “그 때 나이가 대략 15살 이상 되면 민청가입 안 한 사람이 없고 민청노래 안 부른 사람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한 당시 봉황면당 부위원장이었던 안○○의 제안에 따라 선동마을 주민 중 그를 포함하여 네 사람이 인민의용군에 입대한 사실이 있으며, 그 중 한사람은 본 사건으로 희생된 김○○(김○○)이라고 진술하였다.²⁰⁾ 경찰과 우익 측의 시각일 수는 있지만 서○○(특공대 3소대장)을 비롯한 일부 참전경찰 출신 참고인과, 대한청년단 등 당시 우익청년단체 활동을 했던 참고인들은 철천리 주민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좌익성향이 강했고, 인민군 점령시기에 적극적으로 부역했다고 진술하였다.²¹⁾

(나주경찰서) 정보과3계에서 작성한 「신원기록대상자연명부」²²⁾에 본 사건의 희생자인 ‘서○○’의 처단기록이 아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 8〉 신원기록대상자연명부의 서○○ 기재내용

連番	姓 名	生年月日	原 籍	特異事項	備考
		性 別	本 籍 住 所		
서○○ 漢文(徐○○)	남	○○.0.0	전남 나주군 봉황면 ○○리 ○○	부락 민청원 부역처단	처단
			상동		
			상동		

즉, 위 기록은 본 사건의 가해이유가 부역혐의로 인한 처형이었음을 추정하게 하는 경찰의 공식기록이다.

20) 강○○ 진술조서, 3~8쪽 ; 이○○ 진술녹취록, 3~4쪽.

21) 서○○ 진술조서, 8쪽 ; 심○○ 진술녹취록, 17쪽 ; 심○○ 진술요약서, 2~3쪽.

22) 진실화해위원회는 나주경찰서에서 작성·보존하고 있는 사건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나주경찰서를 방문하여(2006. 11. 6.) 동 사건과 관련 있는 「신원기록대상자연명부」(전체 79쪽)를 열람하고 그 사본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신원기록대상자연명부」는 나주경찰서 정보과가 관리하고 있는 존안(存案)자료로서 원적과 본적이 나주시 출신인 825명(현존 132, 부재 198, 처형 193, 시찰 302)에 대한 기록이다. (1) 이 문건은 대부분 한국전쟁시기 좌익활동으로 생포되거나 자수한 사람들 중에서 기록 당시까지 생존한 사람은 ‘현존’으로 표시하고, (2) (인민)의용군 입대 행불, ‘부역행불’, ‘남로당 부역일북’ 등으로 규정한 사람은 ‘부재’로 표시하였으며, (3) 또한 ‘보도연맹 부역처단’, ‘내무서원 부역처단’, ‘유격대원 부역처단’등으로 처리된 사람은 ‘처단’ 혹은 ‘처형’으로 표시하고, (4) 그 외 좌익혐의 전과자에 대한 보안처분대상자와 관찰보호자는 ‘시찰’로 분류하여 작성한 기록이다.

참고인 진술과 자료조사 결과 철천리 주민들이 인민군 점령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부역행위를 했음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어 보였다. 따라서 수복 이후 당국의 지시 하에 추진된 부역자 처리의 일환으로 본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일단 추론할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인민군의 통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자들에 대한 처리는 1950년 6월 25일 선포된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에 따라 수복 직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²³⁾ 그러나 불법적인 부역자처리를 막기 위해 「사형금지법」과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이 1950년 12월 1일 법률 제156호와 제157호로 각각 제정되었다. 즉 나주 동박굴재 사건이 발생한 1951년 2월 말 당시는 정부가 인민군 점령하에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부역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뒤였다. 물론 이 법이 일선 경찰에게까지 광범위하게 교육되고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는 의문이지만, 본 사건의 희생 경과를 추적하는 데 분명히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원기록대상자연명부」에 기록된 봉황면 출신 ‘부역처단자’ 총 9명 중에서 서○○를 제외한 8명의 처형시기와 처형형태를 조사하였다. 봉황면사무소에 유족의 주민조회를 의뢰하여²⁴⁾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9〉 봉황면 ‘부역 처단자’의 사망경위

연번	이름	생년월일	「신원기록대상 자연명부」 기록사항	사망일	사망경위	진술자 (진술형태)
1	김○○	○○.○○.○ ○	리 새책 ²⁵⁾ 부역처단	50.○○.○○	아침 6시, 경찰이 집에 있는 희생자를 연행하여 10분 뒤 마을 뒤에서 총살함. 희생자는 당시 구장이었음.	자 김○○ (전화탐문)
2	이○○	○○.○○.○ ○	부락 새책 부역처단	50.○○.○○	빨치산에게 밥을 해주었다고 경찰에 의해 총살됨. 처 문○○는 1년간량 복역함	자 이○○ (진술조서)
3	조○○	○○.○○.○ ○	남로당원 부역처단	50.○○.○○	경찰을 피해 집을 나간 뒤 사망하여 사망경위 잘 모름. 시신은 수습.	자 조○○ (진술조서)
4	박○○	○○.○○.○ ○	리민청원 부역처단	50년 ○○경	가을철에 집을 나가서 사망. 시신 수습 못함	동생 박○○ (전화탐문)

23) 그러나 앞서도 서술했듯이 수복 이후 경찰은 부역자처리를 하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개인감정에 따른 보복살인을 저질러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다.

24) 조사4팀-70, 2007.2.14.

25) 자료에는 ‘새책’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나 원래는 ‘세포책임자’의 준말로서 ‘새책’이 올바른 표현이다.



연번	이름	생년월일	「신원기록대상 자연명부」 기록사항	사망일	사망경위	진술자 (진술형태)
5	안○○	○○.○○.○ ○	리민청원 부역처단		유족 파악 못함	
6	이○○	○○.○○.○ ○	부락새책 부역처단	50년 ○○월초	음력 9월말 경 집을 나가서 사망 함.	형 이○○ (전화담문)
7	백○○	○○.○○.○ ○	부락새책 부역처단		유족 파악 못함	
8	김○○ (김○○)	○○.○○.○ ○	부락 민청원 부역처단	50.○○.○○	김○○의 부친 김○○은 전쟁 때 사망하지 않음. 김○○의 숙부 김 ○○가 피난 다니던 중 50.○○.○ ○ 경찰에 의해 총살당함.	조카 김○○ (전화담문)

조사결과, 「신원기록대상자연명부」에 기재된 봉황면의 '부역처단자'들은 대체로 수복 직후인 1950년 11월경 경찰에 의해 총살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도피 혹은 입산하여 사망한 사람은 사망 경위가 불분명하지만, 동박굴재 사건의 경우처럼 집단적으로 희생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봉황면에서 진행된 일반적인 부역자 처리과정은 동박굴재 사건 전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본 사건을 부역자처리의 일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희생자들이 적극적인 부역자들이었다면 이들도 그 전에 도피했을 것이다.

참고인 정○○을 비롯한 일부 신청인들²⁶⁾은 당시 경찰이 미리 작성된 '명단'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명단'에 근거하여 희생자들을 연행하여 총살시켰다고 진술하였다. 신청인들은 누군가 지서에 잡혀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 명단이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특히 신청인 정○○은 '명단'작성에 도움을 준 사람을 '서○○'으로 지목하였다.²⁷⁾

사건 발생 전에 입산한 전력이 있었던 정○○은 경찰이 호명했으나 마당 한쪽에 파놓은 구덩이에 들어가서 생존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참고인 강○○은 본인이 인민군 점령시기 의용군에 입대했다가 귀가한 뒤 자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작성한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생존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경찰이 작성하여 가져왔다고 주장하는 '명단'에는 수복 후 경찰의 체포를 피해 입산한 사람들과 그 가족, 입산경력자, 자수자, 부역혐의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강○○(생존자)을 비롯해 많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의 희생자들은 입산자가 아닌

26) 정○○ 진술조서, 6~7쪽; 정병률 진술조서, 4쪽; 서상국 진술조서, 4~5쪽; 서상원 진술조서, 4~5쪽.

27) 서○○은 이미 사망하였고 서○○의 가족 또한 본 사건으로 희생된 것으로 진실규명 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다.

입산자의 가족으로서 자식 혹은 남편이 입산하였기 때문에 부모 혹은 아내가 그들 대신 처형당했다고 진술하였다.²⁸⁾

양성일을 비롯한 일부 신청인들도 당시 경찰이 반드시 '명단'에 의거하여 처형한 것이 아니라 소집된 마을주민 중에서 얼굴을 보고 젊은 사람(남자)이면 무조건 연행하여 처형했다고 진술하였다.²⁹⁾

최인교를 비롯한 송현리 신청인들은 희생자들이 본 사건 발생 이틀 전 '공명'에게 '빨갱이'라는 이유로 연행된 후 봉황지서에 이틀 동안 감금되었다가 본 사건 당시 함께 희생되었다고 진술하였다.³⁰⁾ 또한 서상국을 비롯한 신청인들은 희생자가 마을에서 구장, 반장 등을 하고 있었는데 희생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³¹⁾

이러한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희생 이유를 희생자의 신원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희생이유별 희생자 분류

마 을	입산자 가족	젊은 남자	좌익혐의자	구 장	계
철천리3구 (선동)	이 동(48)-아들 이○○ 입산 안만제(68)-아들 안○○ 입산 안세월댁(50대)-아들 안○○ 입산	김도관(35) 양창호(33) 김도현(31) 정문채(31) 정찬규(30) 김다복(37)			9
철천리 1·2구, 각동리(철야)	서일기(55)-아들 서○○ 피난 ³²⁾ 김용구덕(51)-아들 서○○ 피난 서정수(56)-아들 서○○ 입산 홍공순(25)-남편 서○○ 입산 서정수(56)-아들 서○○ 입산 최애순(52)-아들 서○○ 입산 정홍점(52)-아들 서○○ 입산 홍홍현(28)-남편 서○○ 입산	서치호(32) 서방열(29) 정병수(17) 서광순(38)		서판대(43) 임미래(42) 정판옥(27) 정승주(26)	16

28) 강○○ 진술조서, 7쪽; 이성문 진술조서, 3~4쪽; 서상원 진술조서, 4쪽; 서병현 전화탐문조사보고; 서중순 전화탐문조사보고; 안국현 전화탐문조사보고; 최순금 전화탐문조사보고.

29) 양성일 진술조서, 5쪽; 최영재 진술조서, 3쪽; 정찬복 진술조서, 4쪽; 이문선 진술조서, 3쪽; 서의광 진술조서, 6쪽; 양일순 진술조서, 2쪽.

30) 최영재 진술조서, 3쪽; 최인교 진술조서, 3~4쪽; 최순금 전화탐문조사보고.

31) 서상국 진술조서, 5~6쪽; 정현진 진술조서, 3쪽; 정학균 진술조서 2쪽.

32) 서일기와 김용구덕의 아들이자 신청인 서병현에 따르면 전쟁직후 작은형(서○○)은 보도연맹사건으로 사망하였고, 본 사건당시 큰형 서○○은 피난을 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피난이 반드시 입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의로 입산자의 가족으로



마을	입산자 가족	젊은 남자	좌익혐의자	구장	계
송현리 (원봉)			최○○(20) 최○○(28) 서○○(34)		3
계	11	10	3	4	28

송현리 희생자 3인을 젊은 남자로 분류한다면, 결국 희생자들은 수복이후 입산자의 가족과 동네 젊은 남자들로 압축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951년 2월 26일 철천리의 입산자 가족과 젊은 남자들이 집단적으로 희생된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경찰의 봉황면 공비토벌작전 상황을 조사하였다.

경찰 측 공식자료인 『한국경찰대 일일보고서 I』에 따르면 1951년 1월 15일부터 본 사건 발생일까지 나주지역 공비토벌작전은 총 18건이 보고되었고, 그 중 나주경찰서 관할 작전이 5건, 문평지서 관할 작전이 5건, 남평지서 관할 작전이 4건, 봉황지서 관할 작전이 2건(본 사건 포함), 왕곡지서와 다도지서 관할 작전이 각 1건이었다. 즉, 동박굴재 사건 발생 전후인 1951년 2월경 나주지역에서는 공비토벌작전이 수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³³⁾

한편 다도면은 나주의 산간지역으로서 빨치산의 주 활동거점이었던 국사봉(해발 440m)³⁴⁾이 존재하고, 1951년 3월에 이르기까지 수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다도면 수복을 위해 군과 경찰은 수시로 토벌작전을 벌였고, 수세에 몰린 빨치산은 생존을 위해 인근 봉황면 등으로 ‘동지’를 모으고 식량조달 활동을 벌였다.³⁵⁾ 이렇게 보면 빨치산과 경찰 토벌대 사이의 공방전이 계속되는 시기에 봉황면 철천리에서 주민이 집단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봉황면과 철천리의 사회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는 진술들이 있다. 나주경찰서 특공대원이었던 김○○은 봉황면이 적정지역이었기 때문에 봉황면으로 발령나는 것이 두려웠다고 했다. 특히 봉황면에서 빨치산과의 교전 중에 발생한 동료 경찰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입산을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입산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적으로 간주했다

분류하였다.

33) 한편 우리 위원회에 한국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되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나주지역 사건은 총 89건 가운데 봉황면 12건, 문평면 6건, 다도면 68건, 다시면·노안면·세지면 각 1건씩이 접수되었다. 신청건수에서 알 수 있듯이 다도면에서 사건 발생이 집중되어 있는데 대체로 1951년 1월부터 3월까지 군·경 합동작전 혹은 경찰 단독 토벌작전에 의해 비무장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요지의 사건들이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좌익, 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한 다도면 민간인 희생사건 또한 10건이 접수되었다.

34) 다도의 국사봉은 영암군 금정면의 국사봉(해발 640m)과 더불어 장흥유치까지 연결되는 빨치산 활동의 주요 활동거점이었다.

35) 참고인 김○○은 식량조달을 주로 하는 빨치산을 ‘생산부대’라 하였다.(김○○의 진술녹취록, 3쪽)

고 하였다.³⁶⁾ 참고인 김○○는 봉황지서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의 업무보조를 할 당시, “자신을 알아본 빨치산이 가족들에게 보복할까 두려워서 근무하는 3개월 동안 방독면(마스크)을 벗지 않았다”고 진술하여³⁷⁾ 이 지역의 당시 분위기를 알려주고 있다. 서○○ 등 참고인들은 봉황면, 특히 철천리는 빨치산의 주 활동거점인 다도면 국사봉과 인접해 있고 덕룡산 바로 아래에 있어 주민들이 입산을 한 경우가 많았으며, 또한 빨치산들이 식량 등을 충당하기 위해 자주 내려와 이들에게 협력행위를 한 주민들도 많았다고 주장하였다.

참고인 강○○을 비롯한 일부 신청인들도 철천리 주민 중에 수복 후 입산자가 많아 철천리가 좌익마을로 알려졌으며, 철천리 주민들이 빨치산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협력행위를 했기 때문에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³⁸⁾ 그러나 신청인들은 당시 밤이 되면 경찰의 치안권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빨치산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민들의 입산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피난, 빨치산의 강요(혹은 권유),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린 경우 등이었다고 진술하였다.³⁹⁾

『봉황면지』에는 희생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당시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일시적으로 몸을 피해 도피한 사람들의 가족이었다. 그러나 밤이면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고 빨치산이 지배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부역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애매할 수 밖에 없었다.” 곧 희생자 대부분이 당시 일시적으로 도피한 사람(입산자)들의 가족이라고 밝히고, 이들이 빨치산에 부역(협력)한 자로 지목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즉 나주 동박굴재 사건은 나주경찰서 특공대의 빨치산 토벌작전 과정에서 벌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볼 수 있다. 동 사건은 경찰이 다도면 국사봉을 근거지로 활약하는 공비소탕을 목적으로 토벌작전을 벌이던 중 봉황면 철천리 주민들 중에서 인민군 점령시기 부역한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수복이후에도 입산하여 빨치산으로 활약하고 남은 가족이나 젊은 남자들이 빨치산에게 지속적으로 협력하면서 언제든지 ‘적’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여 집단 총살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은 철천리 주민 중 인민군 점령시기 부역혐의자와 입산자의 가족들을 계획적으로 처형함으로써 다도면 국사봉 일대에서 활동하는 빨치산의 주 보급로와 주민들의 동조행위를 차단하여 빨치산에게 타격을 가하면서 더불어 경찰의 사기를 진작하고 심리적 우위를 점하고자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⁴⁰⁾

36) 서○○ 진술조서, 8쪽; 김○○ 진술녹취록, 3~6쪽; 심○○ 진술녹취록, 17쪽; 심○○ 진술요약서, 2~3쪽.

37) 김○○ 진술조서, 3쪽.

38) 강○○ 진술조서, 8~9쪽; 서돈준 진술조서, 5~6쪽; 정현진 진술조서, 3쪽; 양성일 진술조서, 5쪽; 서성희 진술조서, 4~5쪽.

39) 인민군 정책에 공감하여 자진입산한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신청인들의 진술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40) 실제로 다도면은 동박굴재 사건 이후 수복되었다.



나. 소결

1951년 2월 26일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에서 경찰의 소집명령에 따라 비무장 주민들이 지정된 곳에 모였다가, 그 중 일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처형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경찰기록은 희생자들이 경찰의 토벌작전 중에 사망한 '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이들이 무장 공비가 아니었고 교전중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소집되어 처형된 것은 여러 진술과 정황으로 보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들은 진술 과정에서 사건의 발생이유를 수복 이후 철천리가 좌익 활동의 근거지로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고인들은 진술과정에서 철천리 주민 중 젊은 사람들은 인민군 점령시기 그들의 점령정책에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동조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수복 후의 경찰처벌을 피해 입산한 경우가 많았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경찰이 가져왔다고 하는 '명단' 또한 여러 정황상 입산자 및 가족, 입산경력자, 자수자, 부역혐의자 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자료조사와 참고인 조사결과 나주 동박굴재 사건 발생 당시 나주지역의 공비토벌작전은 다도면 국사봉을 중심으로 빨치산 토벌작전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수세에 몰린 빨치산들은 인근 봉황면에서 식량보급 작전을 수행했으며, 철천리 주민들이 이에 협력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이 과정에서 철천리와 송현리 주민 집단희생 사건이 발생하였다.

즉, 나주경찰서는 다도면 빨치산 토벌작전을 수행하면서 철천리가 빨치산 활동의 근거지인 국사봉과 접경지역이고 철천리 주민 중에 입산자가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입산자의 가족이나 젊은 남자들이 입산자나 빨치산에게 의식주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한다고 의심하여 빨치산과 주민 사이의 연결고리를 분쇄하기 위해 주민들을 집단처형한 것으로 판단된다.

희생자들은 민간인이었으며, 쌍방의 교전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소집되어 총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주경찰서는 마치 교전의 전과인 것처럼 상부에 보고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흔히 그러했듯이 경찰이 민간인 희생을 은폐하거나 전과를 올리고자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4. 가해의 과정과 가해 주체

가. 조사내용

1) 가해의 과정

목격자 및 생존자의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사건 현장에서 희생자 선별과정의 존재여부와 가해의 과정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951년 2월 24일 나주경찰서 특공대 소대장 공명희는 송현리 주민 3명을 ‘빨갱이’라는 이유로 연행하여 지서에 감금했다가 이틀 뒤 철천리 3구 선동마을에 끌고 왔다. 1951년 2월 26일 새벽 경찰은 선동마을을 포위하고 주민들을 소집한 뒤 미리 작성한 ‘명단’에 의거하여 입산자 가족과 젊은 남자들 11명을 지목하여 따로 분류한 뒤 철천리 철야마을로 끌고 갔다. 철야마을에 도착한 경찰은 공포를 쏘며 주민들을 소집한 다음 미리 작성한 ‘명단’에 비추어 입산자 가족⁴¹⁾과 젊은 남자 18명을 따로 분류하였다.⁴²⁾ 이 과정에서 ‘명단’의 대상자가 없는 경우 가족을 대신 연행하여 숫자를 채우고 처형하였다.⁴³⁾ 또한 ‘홍공순’처럼 경찰이 가져온 ‘명단’에는 이름이 없었으나 가족이 폭행당하고 연행되자 경찰에 항의하거나 따라갔다가 희생된 경우도 있었다.⁴⁴⁾ 그러나 경찰들은 주민들을 소집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희생자 개개인의 부역혐의나 구체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으며, 일정한 법적인 처리기준을 적용하지도 않았다.

경찰들은 이장이었던 정승렬의 집에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32명의 주민들을 앞뒤에서 포위한 채 철야마을 만호정에서 약 4km 떨어진 뒷산 동박굴재로 데려가 오전 12시경 총살하였다.

참고인들은 총살 당시의 상황을 진술했는데 이는 희생장소에서 생존한 김영태에게 들은 것이었고 『나주투데이』에 보도⁴⁵⁾된 ‘김영태의 현장증언’과도 일치한다. 경찰이 주민들을 끌고 동박굴재에 도착한 후 젊은 사람들은 윗 능선에, 나이든 노인들은 50m 아래 움푹 패인 곳에 앉히더니 갑자기 노인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그 모습을 본 젊은 사람들은 아연실색했고 서방열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특공대장 ‘공명’은 그를 총살하였다. 총격이 시작되자 김영태, 서찬수, 서상빈이 산 아래를 향해 뛰었으며⁴⁶⁾ 김영희는 시신들 사이로 기어들어가 살았다.⁴⁷⁾ 이들 현장생존자들은 현재 모두 사망하였다.

2) 가해 주체

본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가해주체는 경찰로 압축되었고 그동안 발간된 자료들⁴⁸⁾에서는

41) 당시 입산자와 피난자의 구별은 모호할 수 밖에 없다. 당사자로서는 죽음을 면하기 위한 피난이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입산자, 곧 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입산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희생된 것은 ‘대살(代殺)’로서 전근대적인 처형방식이다.

42) 강○○ 진술조서, 8쪽; 김영산 진술조서, 4쪽; 서상국 진술조서, 5쪽; 이성문 진술조서, 3쪽; 서재중 진술조서, 5~6쪽.

43) 정○○ 진술조서, 5쪽; 정병률 진술조서, 3~4쪽.

44) 이문선 진술조서, 3쪽; 서돈준 진술조서, 3쪽; 서효준 진술조서, 3쪽.

45) 나주투데이, 2001.9.6.

46)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경찰 한 명이 서찬수에게 ‘살고 싶으면 도망가라’고 말했다고 한다.(나주투데이, 2001.9.6.)

47) 선동마을 집단면담 진술녹취록 3~4, 8쪽.

48) 「선동마을 생존자 김영태씨의 증언」, 2000, 총 2쪽; 나주시의회, 「봉황철천리 등 양민학살사건 국회사원 진상조사요구 청원서



본 사건의 가해자로 봉황지서 소속 경찰(지서장 이○○)과 나주경찰서 소속 특공대원(특공대장 ‘공명’)들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신청인들의 주장을 근거로 가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시 봉황지서 경찰과 나주경찰서 특공대원 명단을 추적하였다. 나주경찰서에 1950~1951년간 봉황지서 근무자 현황을 요청했으나⁴⁹⁾ “1951년 나주경찰서의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자료가 소멸되어 근무자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회신하여,⁵⁰⁾ 사건 발생 당시 봉황지서 근무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광주지방보훈청에 나주시에 거주하는 참전경찰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단을 요청했고,⁵¹⁾ 참전경찰 41명과 국가유공자 8명에 대한 명단 및 인적사항 3쪽을 입수하였다.⁵²⁾ 49명에 대한 전화탐문을 진행하여 그 중 사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9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다. 또 당시 경찰의 보조임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봉황면 우익단체 회원 6인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참고인 강○○(생존자)을 비롯해 많은 신청인들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은 봉황지서 소속 경찰⁵³⁾과 의용경찰이며 20명 가량이 왔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특공대장인 ‘공명’ 이외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였다. 신청인 최인교는 ‘공명’이 사건발생 이틀 전 송현리 원봉마을에 와서 마을 주민 3명을 연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서상원은 ‘공명’이 나이 든 노인과 임신 8개월의 며느리를 총으로 가격하고 총살하여 3대를 한꺼번에 죽이는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⁵⁴⁾ 선동마을 집단면담에 참여했던 신청인 및 참고인들 역시 당시 현장에 온 경찰의 수는 20명이 넘었고 공포분위기 때문에 경찰들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공명’ 외에는 누군지 알 수 없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경찰들이 많이 왔던 것으로 보아 다른 곳에서 지원한 특공대⁵⁵⁾였던 것 같고, 대한청년단원 등 우익청년단원들은 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⁵⁶⁾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조사결과 특공대장인 ‘공명’이 사건현장에

외 1건 회부, 2001.12.15, 총 14쪽;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국민위원회, 『전쟁과 집단학살』, 2002, 141~145쪽; 나주시문화원 『나주이야기-근·현대편』, 2003, 184~188쪽;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실태보고서』, 2005, 468~469쪽 등.

49) 집단희생조사기획국-349, 2006.6.20.

50) 경무과-3214, 2006.6.26.

51) 조사4팀-1374, 2006.11.10.

52) 광주지방보훈청, 관리과-7827, 2006.11.15.

53) 당시 가해자들은 모두 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검은색 경찰정복을 착용한 사람도 있었고 군인처럼 새피란 옷을 입은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경찰이라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었다고 한다. (선동마을 집단면담 녹취록, 3쪽).

54) 강○○ 진술조서, 12쪽; 이성문 진술조서, 4~5쪽; 최인교 진술조서, 3쪽; 서재중 진술조서, 4~5쪽; 서상국 진술조서, 3~4쪽; 서상원 진술조서, 4~5쪽.

55) ‘다른 곳에서 지원한 특공대’라는 것은 의용경찰을 지칭하는 듯 하다.

56) 선동마을 집단면담 진술녹취록, 3~4쪽.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신청인 이성문은 봉황지서 주임⁵⁷⁾ 이○○가 선동마을 주민들 앞에서 “내가 ○○○(○)자, ○○(○)자, 이○○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참고인 김○○는 본인이 당시 봉황지서장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였다. 애초에는 특공대 소대장으로서 1개 소대를 관할하여 봉황지서에 근무⁵⁸⁾하면서 토벌작전을 수행했다고 하였다. 그러다 전임지서장이 바뀌어 본인이 봉황지서장 역할을 수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⁵⁹⁾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본 사건 당시 봉황지서장은 김○○이지만, 본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⁶⁰⁾

한편 신청인들이 당시 봉황지서장이면서 본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하는 이○○에 대해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입수한 ‘1950년 전남경찰인사사령부’ 703쪽을 분석한 결과, 이○○(李○○, 19○○년 ○월 ○○일생, 당시 계급 경위)가 1950년 12월 29일자로 경남에서 나주경찰서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이○○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요청하였으나 전남경찰청과 경남경찰청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들이 봉황지서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와 동일인물인지, 그리고 당시 봉황지서장이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참고인 김○○(특공대 ‘공명희소대’ 3분대장)·이○○(봉황면 학도의용대 감찰부장)·김○○(민간인 신분의 봉황지서 근무자)는 당시 봉황지서장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봉황지서에는 경찰과 특공대를 포함해서 40~50명 정도 근무하였으며, 주요 무기는 38식, 99식, 칼빈 등이었고 수류탄과 M1 1정, 야포 1대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본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⁶¹⁾

결국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만으로 봉황지서 경찰의 가해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 다만 『한국경찰대 일일보고서 I』⁶²⁾에는 사건의 행위주체가 ‘봉황지서원(members) 11명’으로 적시되어 있다.

한편 신청인들이 사건의 가해집단 중 다른 하나로 주장하는 나주경찰서 특공대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서○○(특공대 3소대장)을 비롯한 참전경찰 출신 참고인 및 봉황면 우익단체 출신 참고인에 따르면 특공대는 공비토벌과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과 의용경찰들로 구성된 경찰부대조직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들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57)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봉황지서장을 지서주임이라고 호칭하였다.

58) 김○○는 1950년 말경 혹은 1951년 1월부터 1951년 3월까지 봉황지서장을 역임하였으며 다도가 수복되자 다도지서 차석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했다.

59) 그런데 당시 봉황지서장이었다고 주장하는 김○○의 ‘인사프로필’에는 사건 당시 근무지가 나주경찰서 사찰계로 표기되어 있어 김○○가 봉황지서장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60) 김○○ 진술조서, 6~9쪽.

61) 김○○ 진술녹취록, 2~10쪽; 이○○ 진술조서1, 4~5쪽; 김○○ 진술조서, 4쪽.

62)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한국경찰대 일일보고서 I』, 『빨치산자료집』3권, 1996.



같았다.

특공대는 2개 또는 3개 소대로 구성되었는데 1개 소대의 소대원은 약 20~30명, 전체대원은 50명 정도였으나 개인 사정에 따라 빠지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일정하지는 않았다. 소대장도 자주 바뀌었으나 비교적 오래 근무하고 토벌작전 경험이 많은 ‘서○○’과 ‘공명희’, ‘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보통 작전은 소대단위로 진행되는데, 작전이 발생한 관할지서에 동원명령을 내릴 때도 있다.⁶³⁾

1950년 11월 봉황면이 수복되자 나주경찰서 소속 특공대는 봉황지서에 근거지를 두고 봉황면뿐 아니라 인근 다도면과 세지면에서 활동하는 공비토벌작전을 수시로 벌였다. 즉, 특공대는 나주경찰서 소속이지만 그때까지도 군경(軍警)이 인근 다도면과 세지면에 진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봉황면에 1개 소대(소대장 공명희)를 파견하였고 주로 다도면 일봉암 일대에서 작전을 많이 했다.

특공대원은 대부분 한국전쟁발발 후 후퇴과정에서 해남, 완도, 진도 주민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나주부대’ 경험자들이고 일부는 완도 등에서 새롭게 충원한 의용경찰이었다.⁶⁴⁾

전시상황에서 각 경찰서별로 강제로 모집된⁶⁵⁾ 의용경찰은 공식적 발령 기록과 근무상황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보훈처 기록에 따르면 경찰제복을 입고⁶⁶⁾ 경찰들과 함께 국가 치안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최근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마항⁶⁷⁾에 의해, 당시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한국전쟁에 참전한 의용경찰들은 참전유공자로서 보훈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당시 국가의 지시나 명령 하에 사실상의 공무원으로서 복무하였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신청인들의 주장이 일치하므로 현장에 출동했던 특공대는 공명희가 소대장으로 있던 소

63) 그러나 일부 참고인들은 특공대의 구성에 대해 약간 다른 진술을 하였다. 참고인 나○○(나주경찰서 중화기중대장)은 특공대 중에서도 중화기중대가 별도로 존재했는데 진술인은 중화기 중대장으로서 평상시에는 약 20명의 경찰들을 인솔하여 나주시 남산에 직사포 등 중화기를 배치한 뒤 무장빨치산들의 공격에 대비했고 출동명령이 내리면 중화기를 가지고 토벌현장에 출동했다고 진술하였다(나○○ 진술녹취록, 10~11쪽). 참고인 최○○(나주경찰서 특공대 연락병)은 다른 참고인들과 달리 특공대가 소대단위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1개 중대가 있었는데 1개 중대는 3개 소대로 이루어졌고 1개 소대는 약 30명 정도였다. 중대장은 북한 출신 원○○이었고 본인은 중대장의 연락병이었다고 했다.(최○○ 진술녹취록, 12~16쪽)

64) 서○○ 진술조서, 2~9쪽; 김○○의 진술조서, 4~7쪽; 김○○ 진술조서, 4~5쪽; 이○○ 진술조서, 4~5쪽; 김○○ 진술녹취록, 1~10쪽.

65) 전시 후방의 공비를 토벌할 치안병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강원도의 각 경찰서마다 30명 이상 100명 상당의 의용경찰을 모집하였다는 기록은 있지만, 의용소방관의 경우에는 1958년에 가서야 법률적 근거가 제정된 사실, 보훈대상인 의용경찰 중에는 군복무와 의용경찰복무를 이중으로 했다는 사람도 있는 것과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의용경찰의 모집이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6) 의용경찰이 경찰제복을 입고 있는 것은 보훈인정을 위한 사진자료나 경찰역사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67)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대로 확정할 수 있다. 서○○(특공대 3소대장)을 비롯한 참고인들은 공명희가 나주경찰서 소속 특공대원으로서 특공대 1개 소대를 관장하는 소대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들은 공명희가 동박굴재 사건 발생 시기 봉황면에 파견되어 다도면 일봉암고지와 봉황면 철천리 평풍바위고지를 점령한 후 봉황면과 다도면의 공비토벌 작전을 수행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고 기억하였다.⁶⁸⁾

공명희가 소대장으로 있었던 소대의 근무자였던 김○○는 당시 소대는 3개 분대로 나뉘었고 1개 분대원은 대략 10명 내외였지만 사정에 따라 숫자는 바뀌었다고 하였다. 특히 진술인은 공명의 소대장이 지휘하는 소대원이자 3분대장이었는데 3분대의 역할은 주로 잠복근무였다고 진술하였다.⁶⁹⁾ ‘공명희소대’는 나주경찰서 소속이고 봉황지서에 파견을 나왔기 때문에 나주경찰서의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아서 활동하였다.⁷⁰⁾ 그러나 김○○ 자신은 동 사건의 인지 및 가해에 대해서 부정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가 ‘공명희’의 ‘인사프로필’을 입수하여⁷¹⁾ 분석한 결과 신청인들이 사건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공명’의 본명은 ‘공명희’(孔明喜, 19○○년 ○월 ○○일생, 출생지-나주군 동강면 ○○리 ○○○번지)이고 의용경찰이 아니라 공개 채용된 경찰이었다.⁷²⁾ ‘공비토벌’의 공적으로 ‘기장(記章)’⁷³⁾의 상훈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으나 1980년 사망했다. 공명희에 대한 평가는 참고인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일부 진술인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죽인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며,⁷⁴⁾ 반면 경찰출신 참고인들은 ‘공비토벌 작전의 경험이 많고 다수의 전과를 올린 소대장’으로 기억하였다.⁷⁵⁾

본 사건의 가해혐의자로 추정되는 봉황지서와 나주경찰서 특공대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사와 자료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건의 가해주체는 나주경찰서 특공대임이 확인되었다. ‘공명희’를 목격한 신청인 및 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공명희’가 소대장으로 있던 특공대가 사건현장에 출동했다는 것은 확실시되나 봉황지서 소속 경찰의 현장 참여와 가해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 경찰보고서에 행위주체로 명시된 ‘봉황지서원 11명’은 특공대가 봉황지서에 파견 나왔

68) 서○○ 진술조서, 8쪽; 이○○ 진술조서, 5~6쪽; 김○○ 진술녹취록, 2~4쪽; 최○○ 진술녹취록, 16쪽; 나○○ 진술녹취록, 16~17쪽; 김○○ 진술녹취록, 3~8쪽; 김○○ 진술녹취록, 1~11쪽; 심○○의 진술녹취록, 19~21쪽; 심○○ 진술요약서, 2쪽.

69) 김○○ 진술녹취록, 1~10쪽.

70) 김○○ 진술녹취록, 3~4쪽; 김○○의 진술녹취록, 2쪽.

71) 진실화해위원회는 ‘공명’ 등 8인에 대한 경찰인사기록을 요청했고(조사4팀-1283, 2006.11.1.) 전남지방경찰청 경무과 인사계를 방문하여(2006.11.8.) 인사프로필을 입수하였다.

72) 공명희는 1949.03.17. 전라남도 순경 임명을 받고 나주서 보안계에 근무하였다.

73) ‘공비토벌기장(共匪討伐記章)’은 공비토벌에 참여한 자에게 수여한 표장(標章)이다.

74) 이○○ 진술조서, 6쪽; 심○○ 진술녹취록, 20쪽; 심○○ 진술요약서, 2쪽; 김○○ 진술녹취록, 3~5쪽 등.

75) 김○○ 진술조서, 8쪽; 김○○ 진술녹취록, 6쪽 등.



으므로 특공대원과 봉황지서 경찰 사이의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봉황지서 소속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가해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특공대원의 명단은 알 수 없다.

나. 소결

경찰은 1951년 2월 24일 송현리 주민 3명을 연행하고 1951년 2월 26일 새벽 철천리 주민들을 소집한 다음 미리 작성한 ‘명단’에 의거하여 일부 주민들을 따로 분류했다. 동일 오전 12시경 경찰들은 주민들을 앞뒤로 포위한 후 철야마을 만호정에서 약 4km 떨어진 뒷산 동박굴재로 데려갔는데 시간은 낮 정오경이었다. 경찰은 움푹 패인 곳에 이들을 몰아넣고, 2차에 걸쳐 사살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 가해자로 추정되는 경찰의 구체적인 소속이나 신원, 그리고 이들의 직접적인 고백이나 증언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조사결과 직접적인 가해주체는 당시 봉황지서에 파견 나왔던 나주경찰서 소속 특공대원들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 나주경찰서 특공대는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새롭게 충원된 의용경찰로 구성된 경찰 조직이었다. 특공대의 주 임무는 그때까지 후퇴하지 못하고 입산한 인민군 잔류병력 및 빨치산 토벌과 치안유지였다.

목격자들의 일관된 진술로 판단할 때, 사건 발생 당시 참여한 특공대는 소대장인 공명희가 지휘했다고 확정할 수 있다. 당시 ‘공명희소대’는 봉황지서에 파견되어 다도면 소재 일봉암고지를 점령한 후 봉황면과 인근 세지면, 다도면의 공비토벌작전을 담당한 특공대로 확인되었다.

5. 가해측의 지휘·명령체계와 적법성 여부

가. 조사내용

1) 가해측의 지휘·명령체계

나주경찰서 특공대원들의 지휘·명령계통은 『전남경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경찰사』에는 “수복 즉시 난점에 봉착한 전남경찰은 각 경찰서별로 경찰서장이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하여 해당 관내의 공비토벌과 민심안정에 주력하는 한편, 도 경찰국 산하에 보안과장 조재용 총경의 지휘를 받는 경찰국 직속기동대를 편성하여 보다 조직적인 공비격멸에 임하였다”⁷⁶⁾는 기록이 있다.

76)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전남경찰사』, 1992, 584~585쪽.

이 기록은 수복 직후 전남 경찰의 공비토벌작전에서 지휘·명령권자는 해당지역 경찰서 장임을 밝히고 있는데, 본 사건 발생지역은 나주경찰서 관할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지방경찰청 경무과 인사계에 인사기록을 요청하여⁷⁷⁾ 회신을 받은 결과, 김영태(金永台)가 경감의 직위로 1950년 10월 2일~1951년 6월 4일 제8대 나주경찰서장을 역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⁷⁸⁾ 따라서 본 사건의 실질적인 지휘권자는 당시 나주경찰서 서장 김영태로 판단된다.

김○○(나주경찰서 특공대원) 등 참전경찰 출신 참고인들은 나주지역에서 벌어지는 공비 토벌작전의 과정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된 진술을 하였다.

각 마을마다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야경담당자, 마을 책임자 혹은 자수자)은 공비 출현이나 주민의 부역행위 등의 정보를 입수하면 반드시 지서에 보고를 하였으며, 이 보고를 접수한 지서 담당자는 나주경찰서 사찰계에 보고하였다. 나주경찰서장은 사찰계에서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작전명령을 내리는데 토벌작전에 관한 전반적인 주관은 경비주임이 담당하여 특공대에 출동명령을 내렸다. 그러므로 나주시 관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토벌작전 및 부역자 처리에 대한 지휘·명령권자는 나주경찰서장이었다. 다만 군·경 합동작전을 할 때는 나주·화순·영암·장흥 경찰서와 합동작전을 벌이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관기관장들 사이의 회의를 거쳐서 작전을 수행하였다.⁷⁹⁾

그런데 공비토벌 및 부역자 처리는 나주경찰서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한 사항은 아니었다. 전시 경찰은 군의 지휘명령체계 내에 있었으므로 나주경찰서 또한 호남지역 공비 토벌을 담당하는 전남지구 전투사령부(국군 제11사단 제20연대)의 지시와 명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⁸⁰⁾ 그러나 나주 동박골재 사건과 관련하여 국군 제11사단의 직접적인 지휘명령 여부는 파악할 수 없다. 한편 이와 별도로 부역자 처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내무부 치안국에서 내린 강력한 처벌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2) 가해의 적법성 여부

조사결과, 경찰인 특공대원들은 교전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무장의 저항할 수 없는 노인과 임산부를 포함한 민간인을 부역혐의자, 빨치산협력자라는 이유로 처형하였다.

77) 조사4팀-24, 2007.1.11.

78) '김영태의 인사프로필', '나주동박골재사건조사에 따른 인사기록 통보'(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무과-000904, 2007.1.17.)

79) 서○○ 진술조서, 4~8쪽; 최○○ 진술녹취록, 10~13쪽; 나○○ 진술녹취록, 11~13쪽; 김○○ 진술녹취록, 7~8쪽; 김○○ 진술조서, 4~5쪽.

80) 1951년 1월 27일자 육본 작전지시 제39호에 따르면 '1. 군전투지역에서 행동하고 있는 일체 경찰병력은 해(該)지구전투 사령관의 작전지상 구속을 받음은 이미 시달 비와 여(如)함. 2. 차후 각 군단 및 각 사단전투지경내 경찰의 배비(配備) 이동 일절은 각 군단장 및 해(該) 지구 군전투사령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실시함을 요함'(『한국전쟁사료』 제 64집, 88쪽)이라고 되어있다.



희생자 중 상당수는 ‘입산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형되었는데, 이는 모든 국가의 형법상 대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이나 ‘응분의 처벌원칙’에 위배되는 연좌제적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이다.⁸¹⁾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밥을 해주고 옷을 준 소위 ‘비자발적 부역혐의자’들도 처형되었는데, 비자발적 부역의 경우는 당시 우리나라 법⁸²⁾이나 판례⁸³⁾에서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또한 1951년 2월 26일 나주 동박굴재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처형되었다고 판단된다. 희생자 중에 부역 혐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종류와 정도가 각각 다를 것이며, 또한 당시 법에 의해 개인별로 조사 후 처벌이 되어야 했을 것이다.

전쟁중이라 하더라도 민간인에 대한 즉결처형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 사건의 경우 희생자들이 설령 부역혐의자 혹은 빨치산 협력자였다고 할지라도 당시에 존재하던 「국방경비법(國防警備法)」,⁸⁴⁾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⁸⁵⁾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었고, 비록 제정과 집행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기는 하나⁸⁶⁾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非常事態下의 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措置令)」⁸⁷⁾을 적용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집단처형은 그 어느 법 가운데 하나라도

- 81) 당시 「구형법」 제105조에는 “본장의 죄는 범인 또는 도주자의 친족으로서 범인 또는 도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범한 때에는 이를 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친족 간의 범죄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82) 부역행위특별처리법(법률 제157호 1950.12.1제정)에는 단순히 부화수행한 자(제2조 제1항), 학교, 공장, 회사 등 직장에서 단순히 그 직무를 이행한 자(제2조 제2항), 역도가 조직한 단체에 가입함에 그친 자(제2조 제3항)는 그 형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발성과 적극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 83) 우리나라 부역재판기록을 담고 있는 『좌익사건실록』을 보면, 처벌되는 부역행위가 되기 위해서 대체로 인민위원장과 같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필수요건은 아님), 인력동원, 재산약탈, 반동분자의 폭행, 처형 등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징역이나 사형이 언도되었다. 대감찰청, 『좌익사건실록』, 1972, 10권.
- 84) 「국방경비법」은 제정과정에서 모호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조용환 변호사 논문, 「성문화된 관습형법-‘국방경비법’의 인권문제 참조), 그 구성과 내용이 1920년 「미국법전」의 입법례를 본받아 이적죄(제32조)와 간첩죄(제33조)를 제2편 제5장 전시범 아래에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의 구성요건은 그 행위 주체를 군법이 적용되는 자에 국한하지 않고 여하한 자 또는 누구나를 주어로 규정하여 군법이 적용되는 자가 아닌 민간인도 그 범죄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역자 처벌에 관한 범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 연락 또는 방조) : 직접, 간접으로 무기, 탄약, 양식, 금전 기타 물자로서 적을 구원 혹은 구원을 기도하거나 또는 고의로 적을 은닉 혹은 보호하거나 또는 적과 통신 연락 혹은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여하한 지든지 군법회의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제33조(간첩) : 조선경비대의 여하한 요새지, 주둔지, 숙사 혹은 진영 내에서 간첩으로서 잠복 또는 행동하는 여하한 지든지 고등군법회의에서 차를 재판하며, 유죄시에는 사형에 처함.
- 85) 제1조 :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또는 집단에 있어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 제2조 : 전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한 자 또는 그 결사, 집단에 있어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 제3조 : 전2조의 결사 또는 집단의 지령이나 전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 제4조 : 전3조의 죄를 범하게 하거나 정을 알고 총포, 탄약, 도검 또는 금품 기타의 재산상 이익을 공급 또는 약속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3조의 죄를 방조한 자.
- 86) 이 법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존재한 법령 중 최악의 악법이었다고 한인섭은 주장한다. (한인섭, 「한국전쟁과 형사법」, 『법학』, 2000)
- 87) 1950년 6월 25일 선포된 대통령 긴급명령 제1호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은 포괄적인 비상범죄와 그에 따른 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제4조제3항 : 권한을 참칭하거나 또는 이적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상해, 폭행한 행위. 제4조제4항 : 권한을

적용을 받았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⁸⁸⁾

경찰 특공대에 의한 이런 민간인 살해행위는 국내법적으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⁸⁹⁾ 또한 부역자의 불법적 처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⁹⁰⁾ 제정되었던 「부역행위특별처리법(附逆行爲特別處理法)」, 「사형금지법(私刑禁止法)」⁹¹⁾이 있었음에도 적용받지 아니했다.

안○○의 경우 인민군 치하에서 면 분주소장이라는 중책을 역임했던 적극적인 부역자임에도, 자수한 뒤 재판을 받아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복역했을 뿐 처형되지 않았다. 즉 전시일지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벌이 가능했는데도 본 사건 희생자들은 개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처형 되었다.

나. 소결

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참고인들의 진술과 자료조사 결과, 나주 동박골재사건의 지휘·명령권자는 1차적으로 당시 나주경찰서 서장인 김영태로 추정된다. 이것은 특공대가 나주경찰서 소속이었고, 나주시 관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공비토벌 작전의 명령을 나주경찰서장이 내렸다는 참고인들의 증언에서도 뒷받침된다. 그러나 비록 나주경찰서장이 지휘·명령권자라 해도 그가 사건 관련 주민들의 연행과 사살명령을 직접 내렸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⁹²⁾

모용하거나 또는 적에게 정보제공 또는 안내한 행위. 제4조제5항: 적에게 무기, 식량, 유류, 연료 기타의 물품을 제공하여 작을 자진방조한 행위. 제5조: 정보제공, 안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2조의 범행에 가공한 자는 주범의 례에 의하여 처단한다. 제9조: 본령에 규정한 죄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동 지원의 단독판사가 행한다.

88) 「표 9」 봉황면 '부역 처단자'의 사망경위를 살펴보면 부역혐의자에 대한 처리가 당시의 법적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임의적인 불법처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청되지 않았거나 본 사건의 희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불법으로 처형된 부역혐의자들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9) 전쟁하의 계엄상황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은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최소한의 원칙'에 따라 제약은 될지언정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학계나 판례의 일반적 입장이다.

관련판례는 다음과 같다.

- 계엄하의 특별조치에 영장없이 체포·구금·수색할 수 있다는 것이 포함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4286.10.8. 헌위결정 4286 헌위2)

- 비상계엄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조치의 효력은 필요한 최소한을 넘어서면 안된다. (1985.5.28. 대판81 도 1045)

90) 당시 동아일보 1950년 11월 14일자에는 "사형금지법이 타인의 생명·신체 자유, 재산을 존중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수단 또는 수순을 경하지 않고는 이를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군·경·청년방위대 기타 청년단체 등에 있어 일체의 사형을 엄금하기 위해 제정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군·경·청년방위대 기타 청년단체에 의한 부역자에 대한 불법적 처형이 공공연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반공이라는 국시 하에서 공공기관에 의한 불법적 처형이 묵인된 것으로 보인다.

91) 역도 또는 부역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이유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한 수속 또는 재판을 경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에 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92) 설사 명령을 하지 않았더라도 참고인들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나주경찰서장에게 공비와 부역자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고 증언한 바 지휘책임이론에 따라 부하(지휘책임의 관계적 요건)들의 범죄행위를 사건 당일의 일상적 보고를 통해 알 수



전체적으로 전쟁기간 경찰의 공비토벌작전 및 부역혐의자 처리의 최종 지휘권자는 관할 경찰서장이었다. 그러나 그의 권한은 상부기관인 전라남도경찰국-치안국(治安局)-내무부로부터 부여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은 민간인 희생의 최종적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집단처형은 당시 존재하고 있던 어떤 법의 적용도 받지 않았던 명백한 불법처형이었다.

6. 이후 유족의 피해

유족들은 가족의 희생이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조사과정에서 신청인들이 진술을 멈추고 한숨을 쉬며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진술 도중에 계속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과 작성된 진술조서를 보면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노년의 남성 유족들을 대하는 것은 그리 낯선 광경이 아니었다.

유족들은 부모를 동시에 잃은 슬픔 속에서 육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남들처럼 배우지 못한 것을 크게 아쉬워하였다. 많은 경우 학력이 낮고 기술이 없어서 일용노동자 등에 종사하다가 결국은 고향에 돌아와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경제적 고통을 받았다고 회고하였다. 가장을 잃고 혼자된 여성과 남은 어린 자녀들이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 또한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유족들은 대체로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⁹³⁾ 어린 자식들이 가진 것 없이 객지로 나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한편 남편이 사망한 경우 아내가 재가하기도 하고, 아들이 없는 경우 조카를 호적상 양자로 편입하여 가족이 재구성되기도 하였다.

한편 유족들 대부분이 신원조회를 필요로 하는 공무원 등에 임용된 경우가 별로 없어서 연좌제 피해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서돈준의 경우 중동에 취직하려 했으나 출국하지 못했고 정현진은 남동생이 젊었을 때 취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다. 또 서상원은 본인이 직장에서 승진을 못한 것이 부친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⁹⁴⁾

유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50년 넘게 지속된 반공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죽은 가족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혼재된 자아상실감이었다.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남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고통의 원인이 죽은 이에게 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경찰

있었으며(지휘책임의 인적적 요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발생 방지나 부하를 처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지휘책임의 행위적 요건) 지휘책임이 발생한다고 판단된다.

93) 서의광 진술조서, 7~8쪽; 정친술 진술조서, 5쪽; 김정웅 진술조서, 5쪽; 김재연 진술조서 6~7쪽; 서상국 진술조서, 8쪽; 서효준 진술조서, 7쪽; 서병준 진술조서, 6쪽.

94) 서돈준 진술조서, 8~9쪽; 정현진 진술조서, 4쪽; 서상원 진술조서, 6쪽.

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까지도 부친의 죽음을 자녀들에게 멋떳하게 알리지 못한다고 진술한 이도 있었다.⁹⁵⁾ 모든 유족들은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관한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다.

V.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 가. 서치호 외 27명은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2월 26일 정오경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철천리 뒷산(속칭 동박굴재)에서 나주경찰서 특공대원들에 의해 집단총살 되었다.
- 나. 위 사건의 경위를 보면, 나주경찰서 특공대가 1951년 2월 24일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 원봉마을 주민 3명을 ‘빨갱이’로 지목, 연행하여 봉황지서에 감금하였다가 2월 26일 새벽에 봉황면 철천리 3구 선동마을로 끌고 갔다. 비슷한 시각 경찰 특공대원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나주시 봉황면 선동마을과 철야마을 주민들을 각각 소집한 후, 입산자(入山者)의 가족과 현장에서 지목된 젊은 남자들, 가족의 연행에 항의하는 여성 등 29명을 따로 분류하였다. 당일 정오경 경찰 특공대는 송현리 주민 3명과 분류한 철천리 주민 29명 등 총 32명을 앞뒤에서 포위하여 철천리 뒷산(동박굴재)으로 끌고 가서 총살했는데, 그 중 4명은 현장에서 달아나 생존하였다.
- 다. 조사결과, 위 사건의 희생자는 서치호(다-2457), 김도관(다-2458), 이동(다-2459), 양창호(다-2460), 안만재(다-2461), 김도현(다-2462), 정문채(다-2463), 정찬규(다-2465), 김다복(다-2466), 최성교(다-2468), 최정교(다-2469), 서일기(다-2472), 김용구덕(다-2472), 서정수(다-2473), 홍공순(다-2474), 서방열(다-2475), 서판대(다-2476), 임미례(다-2476), 서광순(다-2477), 정병수(다-2478), 서공수(다-2479), 최애순(다-2479), 정판옥(다-2480), 정승주(다-2481), 정홍점(다-2482), 홍홍현(다-2482), 서상채(다-2483), 안세월택(미신청) 등 모두 28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라. 희생자의 대다수는 나주시 봉황면 철야마을, 선동마을, 원봉마을 주민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고 20~30대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도 7명이 포함되었다.
- 마. 조사결과 희생자들은 모두 비무장 민간인으로 비전투원이었음이 밝혀졌다. 다만 철천리 주민 중 일부 젊은 사람들이 인민군 점령기에 점령정책에 동조한 경우가 있었고,

95) 서돈준 진술조서, 8~9쪽.



수복 후에는 그들 중 상당수가 입산한 일이 있었다. 그 때문에 희생자들은 사건 발생 당시 인근 다도면 국사봉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빨치산에게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혐의 아래 집단처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경찰이 주민분류 기준으로 처형대상자 ‘명단’을 사용했다는 증언을 통해 볼 때 이 사건은 계획적인 ‘입산자 가족 및 부역 혐의자 임의처형(任意處刑)’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경찰기록에는 이들이 작전 중에 사살된 ‘적’으로 되어 있어 민간인 희생의 실상이 은폐된 채 공비토벌 전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 바. 나주경찰서 특공대는 처형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부역여부 또는 빨치산 협력여부에 대해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법적 처리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설령 희생자들이 실제 부역혐의자, 빨치산협력자였다고 할지라도 나주경찰서 특공대는 전시 계엄령 하에서 부역혐의 민간인을 처벌하는 최소한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국방경비법(國防警備法)’,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非常事態下의 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措置令)’ 중 어느 것도 적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또한 특공대는 당시 이와 같은 무차별적인 부역자 처벌을 막기 위해 제정된 ‘부역행위특별처리법(附逆行爲特別處理法)’과 ‘사형금지법(私刑禁止法)’이 있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주민들을 즉결처형하였다.
- 사. 나주경찰서 특공대는 수복 이후 공비토벌과 치안유지를 위해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과 의용경찰로 구성되었는데, 이 사건의 직접 가해자는 봉황면에 파견된 특공대 1개 소대(소대장 공명희, 孔明喜)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급 지휘기관인 나주경찰서 서장(경감 김영태, 金永台)이 피해 주민들의 연행 및 총살 명령을 직접 내렸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본 사건의 지휘·명령권은 행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그의 권한은 상부기관인 전라남도경찰국-치안국-내무부로부터 위임된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경찰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민간인희생의 최종적 책임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 아. 나주 동박골재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일차적 소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관할지역 주민을 임의로 불법 처형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었다. 전시 비상사태 하에서 법적절차를 충분히 지키기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비무장 민간인들을 즉결처형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희생 당사자의 죽음도 억울하지만 유족들 역시 불시의 가족구성원 상실 이후 지금까지 경제적 고통과 심리적 위축을 크게 받았고, 소수지만 연좌제(連坐制)에 따라 직업선택이 제한된 경우도 있었다.

2. 권고 및 화해조치

가. 명예회복 조치

1) 국가의 공식 사과

전시라는 비상시기였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권력이 비무장 민간인을 어떠한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집단처형한 것은 명백한 과오이다. 또한 전쟁 이후 반세기 이상이나 유족들이 오히려 죄인처럼 살게 된 것에 대해서도 국가는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는 먼저 사건 희생자와 관련 유족들에게 성의를 다하여 사과하여야 한다.

2) 위령사업의 지원

진실화해위원회는 나주 동박굴재 사건의 희생장소에 대한 알림판 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바, '봉황위령비' 부지매입에 대한 무상지원과 유족들의 위령제 봉행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3) 호적 정정

희생자들의 호적을 검토한 결과 사망날짜와 사망 장소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유족이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서 정정할 것을 권고한다.

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1) 역사기록의 수정 및 등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사회구성원이 잘못된 역사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폭력과 왜곡되고 은폐된 과거사의 진실은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새로 규명된 진실을 역사기록에 등재하여 미래의 디딤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역사기록 부분에서는 먼저 잘못된 각종 지방사의 공식서술을 수정하여 위 진실규명 내용을 반영하고, 나아가 한국전쟁 시기의 유사한 사건과 함께 국가차원의 역사기록에도 등재하여야 할 것이다.

2) 평화인권교육 강화

경찰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쟁 중의 민간인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보편적 인권의 소중함을 함양하는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3) 관련 법률의 정비

또한 차후에 이런 역사적 과오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전시 비무장민간인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관련법에는 경찰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는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기에 미흡하므로 국가 차원의 법제도 정비를 권고한다.